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글로벌시증권자투자신탁H(채권혼합-재간접형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
효 력 발 생 일	2022년 09월 30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9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9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9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8영업일(D+7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5영업일(D+4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8영업일(D+7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5영업일(D+4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
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<u>대차대조표</u>	- <u>재무상태표</u>
<b>[요약정보]</b>			
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9.13 기 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 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9.13 기 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9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 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 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 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 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 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 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 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을 적용. <u>제8영업일(D+7)</u>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 우: <u>제5영업일(D+4)</u> 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. <u>제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. <u>8영업일(D+7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 우: <u>5영업일(D+4)</u> 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. <u>9영업일(D+8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2.09.30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 등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2.09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▶ BNK글로벌AI증권모투자신탁(채 권혼합-재간접형) ① ~ ② (생략) ③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 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 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 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	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▶ BNK글로벌AI증권모투자신탁(채 권혼합-재간접형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 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 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 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

		<p>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④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⑤ ~ ⑩ (생략)</p> <p>나. 투자 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▶BNK글로벌시증권모투자신탁(채권 혼합-재간접형)</p> <p>① (생략) 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 가. (생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 (이하 생략)---</u> 다. (생략) ③ ~ ⑨ (생략)</p>	<p>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④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⑤ ~ ⑩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투자 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▶BNK글로벌시증권모투자신탁(채권 혼합-재간접형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 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 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u> 다. (현행과 동일) ③ ~ ⑨ (현행과 동일)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가. ~ 다. (생략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	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

		<p>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7.8914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1.07.01</u>)</p>	<p>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7.9748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2.07.01</u>)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생략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생략)</p> <p>(4) (생략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8영업일(D+7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8영업일(D+7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</p>

		<p>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5영업일(D+4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9영업일(D+8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3) ~ (5) (생략)</p> <p>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6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전일)</u>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5영업일(D+4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9영업일(D+8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3) ~ (5) (현행과 동일)</p> <p>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6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전일)</u>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p> <p>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p> <p>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-	<p>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 <p>- 보수 및 수수료 부분 비용 관련 주석 추가</p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과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
		<p>(이하 생략)  나. 과세  (1)~(3) (생략) 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 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 - 납입요건 :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</p> <p>- <u>세액공제(2014.1.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:</u> 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u>  - <u>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u>  - <u>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u></p>	<p>(이하 현행과 동일)  나. 과세  (1)~(3) (현행과 동일) 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 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 - 납입요건 :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</u></p> <p>- 세액공제:  [납입금액]  - <u>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  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u>  ③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u></p> <p>[세액공제]  - <u>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</u></p>
--	--	---	--

		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및 C-P2e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(2015.1.1 부터) :</p> <p>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.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%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</p> <p>※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</p>	<p>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및 C-P2e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 :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9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	-	- 2022.09.13 기준으로 업데이트

		제표 확정	
<b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무해지 (생략)</li> <li>- 임의해지</li> <li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무해지 (현행과 동일)</li> <li>- 임의해지</li> <li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<끝>.